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서명옥 · 박충권 · 성일종  
김기웅 · 서일준 · 김정재  
조은희 · 박성훈 · 이종배  
이현승 · 정연옥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·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(대리인)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,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7 신설).

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1조의7(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) ①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(代納)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대납자”라 한다)는 공단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
- ③ 공단은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중단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1조의7(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) ①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(代納)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대납자”라 한다)는 공단에 납부의무자에 대한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납자는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첩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대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공단은 대납자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지</u></p>

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중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